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

1994. 12. .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4일 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1994년 12월 2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財務局長 朴忠會)

### 가. 제안이유

○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매입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서울특별시 자치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 나. 주요골자

- 불용물품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을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하도록 함
- 법정장부 축소-(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제23조 제1항중 2. 비품출부, 5. 소모품대장 및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
-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

##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專門委員 趙大顯)

○ 현행 조례개정 이유가 물품매입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의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물품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을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로 되어있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2
----------	-----

제출년월일 : 1994.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매입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서울특별시 자치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불용물품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을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하도록 함(안 제16조4항)
- 나. 법정장부 축소-(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제23조 제1항중 2. 비품출부, 5. 소모품대장 및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

(안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  
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조 : 물품의 분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6조,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115조, 제  
123조, 제12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주관과장은” 다음에 “물품출납원을 거  
쳐”를 삽입하고, “요구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4항중 “단가 500만원”을 “단가 1천만원”  
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3  
호내지 제4호를 제2호내지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 (1) 비품 ②중 “5  
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7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u>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u>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u>요구한다.</u></p>	<p>제7조(물품매입등의 요구)..... ..... <u>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u> .....</p>
<p>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p>	<p>제16조(불용품이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 ..... 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부 3.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4. 물품 카-드 등록부 5. 소모품대장 6. 도서대장 ② 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제23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 ..... 1. ....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도서대장 .....</p>
<p>[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생략]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① (생략)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③ (생략) (2) 소모품 (생략)</p>	<p>[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① (현행과 같음)     ② ..... ..... 10만원 .....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현행과 같음)</p>